

I. 호주의 인쇄매체와 언론 보도 규제 배경

호주의 신문은 전국 단위로 발행되는 전국지와 특정 주에서만 발행되는 지역지로 구성된다.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의 뉴스 리미티드(News Limited)와 페어팩스(Fairfax) 두 미디어 재벌이 대부분의 일간지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호주 신문 구독률 보고서(Roy Morgan Research, 2018)에 따르면, 종이 신문이나 온라인(웹사이트 또는 앱) 구독자 수는 1,590만여 명으로 이는 14세 이상 호주 인구의 79%에 해당한다. 호주의 대표 일간지로는 전국지인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ustralian Financial Review), 더 새터데이 페이퍼(The Saturday Paper)가 있으며, 일정 주(state)에서 발간되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 디 에이지(The Age), 데일리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 헤럴드 선(Herald Sun),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 쿠리어 메일(Courier-Mail),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ustralian Financial Review)가 있으며, 그 밖에 주말판 신문으로는 텔레그래프(Telegraph), 선데이 헤럴드 선(Sunday Herald Sun), 더 선데이 메일(The Sunday Mail), 디 에이지(The Age),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이 있다.

몇 년 전, 영국 뉴스 코퍼레이션의 신문사인 뉴스 오브 더 월드(News of the World)의 기자들이 정치인, 프로축구선수, 연예인들의 전화 도청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국 정부는 2011년 7월 언론사 직원 및 기자들의 언론 보도와 윤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Leveson Inquiry: Culture, practice and ethics of the press)에 착수하게 되었다. 영국의 이 사건은 호주 정부에 미디어의 뉴스 기능과 저널리즘 윤리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상원의원 밥 브라운(Bob Brown)이 신문 산

* 캔버라대학교 뉴스 미디어 연구 센터 연구원(커뮤니케이션 박사). Jee.Lee@canberra.edu.au

** 캔버라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Yoonmo.Sang@canberra.edu.au

업 전반을 대상으로 저널리즘 윤리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계기로 2011년 9월 14일 호주 정부는 전 연방 법원 재판관 레이 핀켈스타인(Ray Finkelstein)에게 호주 미디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2012년에는 이러한 조사의 결과물인 ‘미디어와 그 규제에 관한 보고서(Report of the Independent Inquiry into the Media and Media Regulation)’¹⁾가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해당 보고서는 변화하는 신문 산업에 따른 당시의 규제와 지원에 관련된 이슈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현재 자율규제체제로 운영되는 호주의 언론보도윤리 및 기준의 실행력이 상당히 약하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신문사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여 독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른 윤리 및 기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도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언론위원회가 언론중재 역할을 하기에는 통제권이 약하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호주의 신문사들은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보도윤리와 기준은 보도의 공정함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1944년 호주 언론예능예술협회(Media Entertainment Arts Alliance)는 기자윤리강령(Journalist Code of Ethics, Box 1 참조)을 마련하여 언론예능예술협회에 가입한 언론사들이 모두가 규범을 준수하게 하였으나,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언론사들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호주의 각 주는 사법윤리위원회(Ethics of Judiciary Committee)를 설치하고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비회원 언론사들의 경우, 호주언론위원회(Australian Press Council)가 직업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언론 보도와 관련된 대중의 불만을 처리해왔으며, 잡지를 포함한 모든 인쇄매체가 보도윤리 준수 등의 감독 대상이다. 한편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부 산하 호주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이 수행하고 있어 여기에서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 불만의 접수·처리를 담당한다. 그 밖의 미디어 기관들은 자체 윤리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1)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정필운(2012) 참조.

Box 1 기자 윤리강령

기자 윤리강령은 1984년에 수정되었고, 1999년 한 차례 더 수정 과정을 거쳐 총 12개의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1.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며, 관련 사실을 누락하지 않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개인 혹은 집단의 인종, 성별, 연령, 종교, 민족, 출신국가, 성적취향, 장애, 연령에 대해 불필요하게 언급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3. 정보원의 정보 제공의 목적을 파악하고 다른 대안적 정보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한다.
4. 보도의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금품 및 어떠한 사적 이익도 허용하지 않는다.
5. 보도로 야기되거나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이익 갈등 사실도 누락하지 않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기자 신분을 이용하지 않는다.
6. 보도의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을 해치는 광고 및 다른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7. 보도를 위한 인터뷰, 사진, 정보의 대가로 지급된 직·간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공개한다.
8. 보도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며, 인터뷰 대상자에 어떠한 권력 및 힘을 행사하지 않는다.
9. 진실되고 정확한 이미지 및 음성 자료를 제공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조작 가능성에 대한 사실을 누락하지 않는다.
10. 표절하지 않는다.
11. 기자는 개인적 애도 및 프라이버시를 침범할 어떠한 충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2. 잘못된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II. 호주언론위원회(The Australian Press Council)²⁾

1. 배경 및 목적

최초의 인쇄 매체 자체 규율 기구인 호주언론위원회는 호주에서 전통적인 언론의 자유를 보전하고 자유로운 언론이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행동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6년 7월 22일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호주의 위원회 설립 헌법 및 규제에 의거하여 인쇄매체 발행인들과 호주기자협회(Australian Journalists Association)의 협회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호주기자협회³⁾는 언론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20년 넘게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업무 — 언론보도 윤리표준 마련, 보도불만처리, 정책적 사안처리 — 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올바른 언론보도윤리표준 개발과 시민들의 보도불만에 대한 처리 및 협상 업무 담당
- 신문, 잡지, 디지털 뉴스 미디어의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및 피해 처리
- 이해 관련 영역의 정책적 사안에 대한 성명 발표, 국회 및 정부 위원회/기관들에 관련 자료 제출

호주언론위원회의 세부적인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 언론매체(신문, 잡지, 기타 인쇄 매체 및 디지털 매체)의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의 심사 및 처리
- 독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인쇄 및 디지털 언론 매체에 대한 정책 지원과 격려
- 공익에 관련된 정보 배포, 대중의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검토 및 압력 행사
-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관련 사안들에 대해 정부 및 공공 조사 진정

2) 호주언론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호주언론위원회 웹사이트(<https://www.presscouncil.org.au>)를 참조하였다.

3) 1910년에서 1992년까지 운영된 호주기자연맹으로, 1992년 배우 연합(Actors Equity, AE), 호주 극장 & 오락 고용인 협회(Australian Theatrical & Amusement Employees Association, ATAEA)와 함께 미디어 연맹(Media Alliance(노동조합))으로 병합되었다.

- 표현의 자유와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한 공중의 인식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컨설팅
- 포럼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

2. 연혁 및 구성

언론위원회 설립 당시 회원사로 일간신문협회(Association of Daily Newspaper), 지방언론협회(Provincial Press Association), 기자협회(Journalist Association)가 참여하였다. 언론사들이 언론위원회에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2016/2017년 위원회 미디어 기업 및 언론 회원사로는 호주 최대 미디어 재벌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와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 Australia), 디지털 네이티브 뉴스 미디어 허핑턴포스트(The Huffington Post), 지역언론협회(Country Press Australia) 등이 있다. 최근 회원사로 가입한 미디어 기관으로는 에코 퍼블리케이션(Echo Publication), 인디펜던트 오스트레일리아(Independent Australia, 2016년 7월 13일 가입)가 있다.

[그림 1] 호주언론위원회 미디어 기업 및 언론 회원사 (2016/2017년)



위원회의 정관은 위원으로서 의장, 신문 발행인 대표, 현직 언론인 대표, 일반 시민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초대 의장으로는 언론 경력이 전혀 없는 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프랭크 키토(Frank Kitto)가 임명되었다. 이후 호주언론위원회 의장으로는 법조인 출신이 줄곧 선출되었으나 학자 출신 켄 맥किन(Ken Mckinnon)이 2000년 12월 1일 의장에 취임한 바 있다. 그 이후에는 학자 출신 의장이 줄곧 선출되어 왔으며 2015년 법학교수 출신인 데이비드 웨이스브롯(David Weisbrot)이 2017년까지 의장직을 맡았다. 2018년부터는 전직 공무원 출신 네빌 스티븐스(Neville Stevens)가 선출되어 현재까지 의장직을 맡고 있다.

언론위원회 설립 당시 위원으로는 일반 시민 대표 3인, 발행인 대표 6인, 호주기자협회에서 추천한 3인을 합해 총 13인이었으나, 현재는 의장 포함 25인의 대표 위원이 존재한다. 모두가 의장의 추천에 의해 평의회 전체 회의에서 임명된다. 의장 이외에는 부의장 2인, 일반시민 대표 8인, 언론 출판계 대표 10인, 독립 언론인 대표 4인을 합해 총 24인으로 구성된다. 일반시민 대표 8인은 언론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전직 관리자, 대학 강사 및 교수, 건강 보건 검토위원회 의장, 고등학교 교사, 현직 수의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종사자 및 은퇴자들이 선출되었다. 일반 시민 대표와 독립 언론인 대표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임명되며, 출판계 대표는 언론사들에 의해 선출된다.

언론위원회는 그 산하에 보도불만위원회⁴⁾, 미디어기관자금위원회(Constituent Funding Sub-Committee), 행정/재정위원회(Administration and Finance Sub-Committee)를 두고 있다. 보도불만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혹은 임명된 패널 의장, 시민 대표 3인, 언론 출판계 대표 3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기관자금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각 언론 출판사의 지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회원사의 기부금 액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행정/재정위원회는 의장, 시민 대표 2인, 출판인 2인, 언론인 1인 혹은 언론예능예술협회의 지명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 언론위원회에는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4) 혹은 평결패널(Adjudication Panel)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3. 정책 및 규제

호주언론위원회는 언론불만 제소 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4가지 주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현재의 보도 주요 원칙은 2014년 한 차례 개정을 거친 후 지금까지 적용되어 오고 있다.

보도 주요 원칙 (The General Principles)

정확성/명확성(Accuracy and clarity)

1.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며, 오피니언 등과 같은 의견 기사와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2. 잘못된 사실이 보도되었을 경우, 수정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공정성/균형성(Fairness and balance)

3.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자료(사진 등)를 사용하며, 의견을 피력할 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중요한 사실 정보를 누락하지 않는다.
4. 보도내용이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후속 보도 시 특정인의 답변에 대한 내용이 공정하게 다뤄질 기회를 부여한다.

개인 사생활 보호(Privacy and avoidance of harm)

5.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6.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격적이며, 편견을 포함하고, 안정과 건강에 대한 위협의 소지가 있는 보도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진실성/투명성(Integrity and transparency)

7.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된 보도 자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8. 이해상충 소지를 피하며, 보도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실을 누락하지 않는다.

보도 주요 원칙과 더불어, 위원회는 보도의 사생활보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사생활보호 원칙은 총 7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개인정보 취합
- 개인정보 이용 및 공개
- 개인정보 내용
- 개인정보 보안
- 취재원 익명 보도
- 정정, 공정 및 균형
- 민감한 개인 정보

〈특정 보도지침 마련〉

2011년 언론위원회는 ‘자살보도지침’이라는 새로운 보도원칙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언론사, 정신건강 전문가 및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심층적 논의를 통해 자살 보도, 개인적 견해 보도, 자살 방법 및 장소에 대한 보도, 사건 책임 소재에 관련된 보도, 관련 자료 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도지침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보도지침에서는,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과 장소를 언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자살 보도 기사의 경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4년에는 보도를 위해 환자와 접촉 시 지켜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해오고 있다.

한편, 언론위원회는 자문기구의 가이드라인을 보도 주요 원칙, 특정 보도지침과 함께 언론 보도 불만에 대한 평결에 참조하고 있는데, 현재의 자문기구 가이드라인은 1977년 마련된 가이드라인으로 현재 언론위원회는 자문기구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자문기구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가정폭력
- 난민/망명/불법 이민자
- 약물
- 나치수용소

- 설문조사
- 헤드라인 종교적 용어 사용
- 선거보도
- 인종 관련 보도
- 기사형 광고
- 편견/성향
- 에디터에게 보내는 편지
- 디지털 이미지 변경 행위

4. 최근 보도불만 평결 사례

2018년 상반기 제기된 보도불만에 대한 평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최근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보도의 공정성, 정확성,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도지침 조항을 위반했다는 평결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1) 개인 프라이버시

○ 2018. 7. 시드니 모닝 헤럴드 (평결 1746)

2017년 10월 17일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2015년 12월 10일 발생한 뉴사우스 웨일즈의 한 살인사건에 대한 법정 공판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 기사에 대해 제기된 보도불만 평결 결과, 희생자의 두 자녀의 사진을 공개한 점에 대해 위원회는 보도지침 5.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아울러 희생자가 어떤 방식으로 살해당했는지 자세히 공개한 점에 대해 위원회는 보도지침 6.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격적이며, 편견을 포함하고, 안정과 건강에 대한 위협의 소지가 있는 보도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다만 일반 장례식장에서 배포된 팸플릿에 게재된 자녀들의 사진을 이용한 점은 장례식 행사가 사적인 행사가 아닌 점과 더불어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힌 후 팸플릿을 받았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는 보도지침 조항 7.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된 보도 자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 2018. 5. 우먼스 데이(Woman’s Day) (평결 1718)

2017년 3월 27일 매거진 우먼스 데이(Woman’s Day)에 실린 “맥도널드의 행복한 하루(It’s McHappy day!)” 제하의 기사에 대해 호주 방송 호스트 크리스 스완(Chrissie Swan)이 불만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크리스가 세 자녀와 맥도널드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사진과 함께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를 언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크리스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에 찍혔으며, 아무리 자신이 유명인사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그녀와 아이들의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기사가 사생활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보도지침 5.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또한 기사에 실린 사진들에 대해서도 보도지침 6.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격적이며 편견을 포함하고, 안정과 건강에 대한 위협의 소지가 있는 보도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 2018. 5. 더 선데이 텔레그래프(The Sunday Telegraph) (평결 1736)

아이에게 폐렴성쌍구균이 옮겨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엄마에 대한 ‘더 선데이 텔레그래프(The Sunday Telegraph)’ 2017년 7월 30일자 신문 및 온라인 기사에 대해 레이첼 페트랙(Rachael Petrak)이 언론불만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기사 정보원이 병원이라는 신뢰할 만한 기관이지만 한 정보원에만 의지하여 추측성 기사를 내보낸 점에서 보도지침 1.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한다’ 및 보도지침 3.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망자와 그 아이의 백신접종 기록을 그대로 기사에 실은 점에 대해 공중보건과 관련한 공익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사망자의 보기 드문 의료상황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해 보도지침 5.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조항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기사의 정보원 수집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공정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도지침 7.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지 않은 이상,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된 보도 자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결했다.

(2) 보도 공정성/정확성

○ 2018. 6. 뉴스(News.com.au.) (평결 1739)

2017년 9월 8일 인터넷 신문인 뉴스(News.com.au)는 “동성결혼 지지자들, 교회신자들과 충돌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는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동성결혼 찬반 우편투표⁵⁾ 전 폭력적 충돌에 차량이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다”라는 부제목으로 시작하는데, 위원회는 이 기사에 사용된 여러 표현들, “충돌(clash)”이라는 용어와 “차량이 무기로 사용되다(cars were used as weapons)” 등은 이날 일어난 충돌이 폭력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이는 보도지침 1.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며, 오피니언 등과 같은 의견 기사와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조항과 보도지침 3.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자료(사진 등)를 사용하며, 의견을 피력할 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중요한 사실 정보를 누락하지 않는다’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 2018. 6. 헤럴드 선(Herald Sun) (평결 1742)

호주의 스포츠 사격 협회는 2017년 6월 20일 헤럴드 선(Herald Sun)의 “온라인 사격단체, 트롤(troll) 자선단체 겨냥” 제하의 기사 및 온라인에 보도된 “총기 로비, 총기 반대 입장에 있는 알라나-매들린(Alannah & Madeline) 자선재단 겨냥하다” 제하의 기사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기사는 최근 알라나-매들린 재단 직원들이 온라인 총기 로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재단 총책임자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여 총기산업 관련자들은 “무기를 소유할 권한이 제한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5) 2017년 9월 호주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을 묻는 우편투표가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뒤, 국민들에게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함.

있다”는 프레임으로 총기 소유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 불만 건에 대해 위원회는 기사에서 다른 총기 관련 일반단체와 온라인의 트롤(trolls) 간에 관련성이 없음에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아 대중에게 총기단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총기 로비단체 등과 같은 일반단체들이 마치 이번 온라인 트롤링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묘사된 점은 보도지침 제1조에 위배되고, 기사가 나간 후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었던 점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도지침 제2조에도 위배되었다는 평결을 내렸다. 아울러 다른 일반 단체들의 의견이나 답변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보도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 2018. 4. 더 큐리어메일(The Courier-Mail) (평결 1731)

2017년 4월 20일 ‘더 큐리어메일(The Courier-Mail)’ 온라인 기사 “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퀸즐랜드 레스토랑 새우 가격 인상”에 대해 로살리(Thai Terrace Rosalie)가 불만을 제기하였다. 기사는 퀸즐랜드에서 발생한 백색점병으로 인해 현지 새우 출하가 금지됨에 따라 어부들이 새우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불만접수자인 로살리는 새우 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새우의 가격이 오히려 인상된 이유는, 정부의 수입산 새우 사용금지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기사 내용이 레스토랑 종사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보도지침 1.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며, 오피니언 등과 같은 의견 기사와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또한 호주 정부의 수입산 새우 금지가 호주 전반의 새우 가격 증가 요인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보도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도지침 3.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자료(사진 등)를 사용하며, 의견을 피력할 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중요한 사실 정보를 누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아울러 보도 후 수정이나 특정인의 답변서를 다루는 추후보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서 보도지침 2. ‘잘못된 사실이 보도되었을 경우, 수정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및 보도지침 4. ‘보도내용이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후속 보도 시 특정인의 답변에 대한 내용이 공정하게 다뤄질 기회를 부여한다’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 2018. 2. 엔티뉴스(NT News) (평결 1733)

위원회는 2017년 4월 20일 엔티뉴스(NT News) 1면 기사에 제기된 불만접수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기사는 백패커 살인사건을 다루면서,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특히 해당 기사는 살인자의 시신처리를 도운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익명의 편지내용을 실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엔티뉴스가 익명의 편지내용에 대해 경찰에 제대로 확인하고 기사를 실었다는 점을 들어, 보도지침 1.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며, 오피니언 등과 같은 의견 기사와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및 지침 3.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자료(사진 등)를 사용하며, 의견을 피력할 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중요한 사실 정보를 누락하지 않는다'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기사에 실린 자료와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이며, 독자들에게 부정적 자극과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보도지침 6.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격적이며, 편견을 포함하고, 안정과 건강에 대한 위협의 소지가 있는 보도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에는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3) 자살 보도/공격성 보도

○ 2018. 6. 데일리 메일 오스트레일리아 (평결 1744)

2017년 5월 30일 데일리 메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도한 시드니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한 남자의 자살사건 관련 기사에 대해 불만이 접수되었다. 기사에 실린 여러 장의 사진에 대한 설명에 사용된 용어가 일부 독자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불만에 대해 위원회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심각한 정도의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는 정도는 아니라는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신문사가 보도를 내보내기 위해 사전에 가족과 가까운 친지나 친구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살보도 지침' 조항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또한 자살 장소가 공공장소라는 점에서 자세한 장소의 공개는 허용되나, 자살 시도 방법이 자세히 묘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살보도 지침' 조항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아울러 본 기사 내용이 대중교통 혼란보다는 자살 자체를 과도하게 부각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살보도 지침' 조항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 2018. 2. 뉴스(News.com.au) (평결 1732)

위원회는 2017년 5월 31일 인터넷 신문인 ‘뉴스(news.com.au)’에 실린 “IS 테러 가이드 검트리와 이베이(Gumtree, eBay) 통해 피해자들 유인” 제하의 기사가 보도지침 조항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기사의 도입단락은 IS가 어떻게 비신자들을 살해하는지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를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호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검트리(Gumtree)나 이베이(eBay)에서 유포되고 있는 거짓광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원회는 보도 내용이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의도는 없으나 제한된 분석과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IS의 자료를 대부분 그대로 옮김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등, IS 선전의 소지가 일정 부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내용이 테러리즘에 대한 것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도지침 6.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격적이며, 편견을 포함하고, 안정과 건강에 대한 위협의 소지가 있는 보도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에는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불만 건에 대해 위원회는 테러리스트 선전과 관련된 보도 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5. 불만처리절차: 접수·협상·처리

언론위원회에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는 인쇄매체(종이신문, 잡지)와 디지털 플랫폼(웹사이트, 소셜 미디어)에 게재된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 사설, 독자투고(기고), 만평, 사진 등이 모두 해당되며, 광고와 기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제외한다. 명확한 광고물은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다.

대상 매체는 언론위원회의 회원사로 가입된 모든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호주의 전체 매체의 약 9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입 회원사뿐만 아니라 호주 내 모든 신문사, 잡지사 및 온라인 매체의 각 보도 내용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언론사들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불만 신청 시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불만 제기

〈해당 매체 접촉〉

불만 신청 당사자는 해당 매체에 불만을 제기한 다음, 혹은 동시에, 혹은 해당 매체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도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에 바로 불만이 제기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불만 접수 대상인지 여부가 먼저 검토된다. 위원회는 불만 신청이 접수되면, 경우에 따라 불만대상 매체와 먼저 접촉하게 하고, 그 매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원만한 해결로 성사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재차 불만을 제기하도록 권고한다.

〈시간 제한〉

불만 신청은 관련 내용이 보도된 후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법적 절차〉

당사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법적 절차를 이미 진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법적 절차 진행 시, 불만 제기 당사자와 해당 언론사는 위원회와 직접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변호사를 대변인으로 내세울 수 없다.

(2) 불만 처리

불만사항이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이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

- 불만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
- 불만 제기자와 해당 매체가 모두 수락할 수 있는 결과물 제시
- 해당 불만사항과 관련된 보도 주요 원칙에 대한 정보 제공
- 평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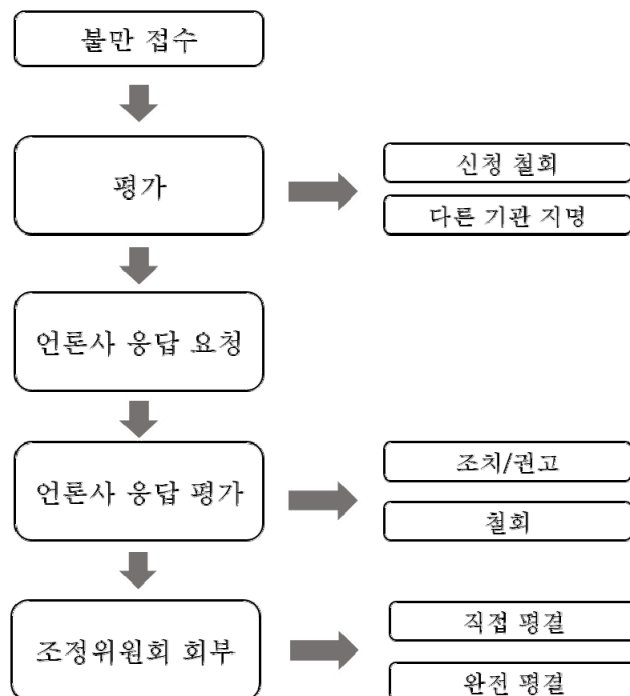
불만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위원회는 벌금 등과 같은 금전적 배상을 명령할 권한은 없지만, 사과 및 정정보도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해당 매체에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의 불만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그림 2 참조), 접수된 불만 사항은 위원회 직원들

에 의해 예비심사 단계를 거치는데, 이는 1단계 과정으로 불만처리위원회의 책임감독과 직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보도 불만 내용에 대해 해당 매체와 협상을 거친 결과, 보도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언론사의 비공식적인 유감표명,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한 정정, 삭제,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및 교육약속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 과정에서 불만 사항이 해결되거나, 불만 제기 당사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거나, 결과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불만처리위원회의 책임감독은 불만 건을 종료한다.

1단계에서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한 경우 불만처리위원회(사무처)는 정식으로 해당 매체에 대한 불만 신청을 접수하고 불만 신청인이 제출한 기록 전부를 매체에 통보하며, 2단계 평결 과정 단계로 넘어가 조정위원회에 정식 회부된다. 평결 절차는 불만 제기 내용의 그 심각성과 복잡성,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안건인지에 따라, 불만 제기자와 해당 언론사의 별도 구두 진술 필요여부가 정해지는데, 별도의 구두 진술을 요하지 않고 서류상의 자료만으로 평결이 가능한 직접평결과 관련 당사자의 구두 진술이 필요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회의를 거쳐 평결을 내려야 하는 완전평결로 나뉜다. 최종 평결내용은 언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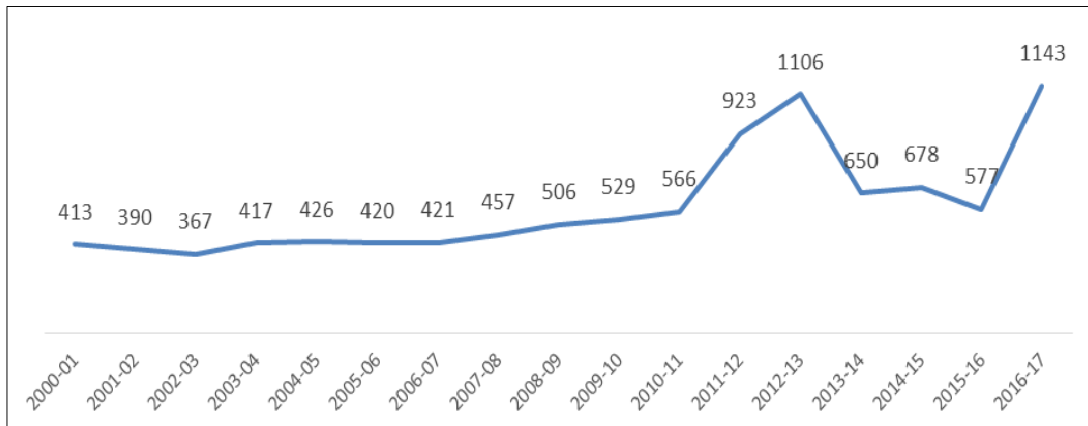
[그림 2] 불만 신청 절차



(3) 불만처리현황

2016/2017년 접수된 불만 건수는 총 1,143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전년 577건 대비 98%의 증가율을 보였다. 언론위원회에 접수된 불만 건수는 지난 17년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6/2017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그림 3). 2016/2017년에 접수된 1,143건의 불만사항 중 평결이 내려진 경우는 565건으로 나타났다으며, 나머지는 평결단계에 이르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종결되었다. 이 중 공식적인 평결이 내려진 경우는 36건이었으며, 그중에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인정 평결이 내려진 경우는 26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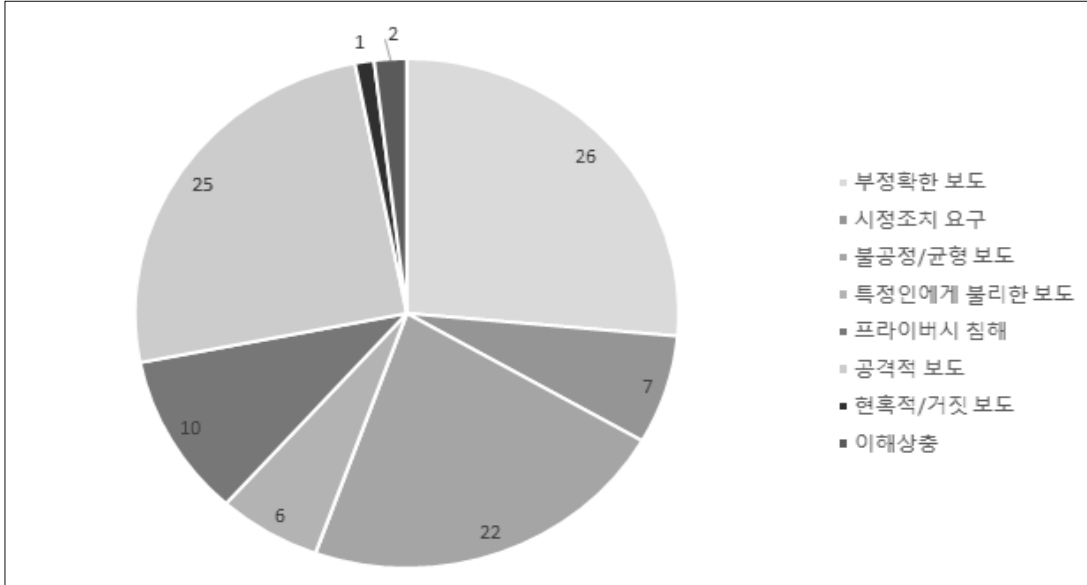
[그림 3] 연간 언론불만제소 건수 (2000-2017)



* 출처: 언론위원회 연간보고서(APC Annual report) 2000-2017 자료 재구성

불만 신청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확한 보도가 302건(2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격적 보도 286건(25%), 불공정/불균형 보도 253건(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4). 전년 대비 부정확한 보도에 관한 불만 건수 비율은 절반 정도 줄어든 반면(52%, 2015/2016), 불공정/불균형 보도의 경우 2015/2016년 10%에서 두 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공격적 보도에 대한 불만건수의 비율도 증가하였다(18%, 201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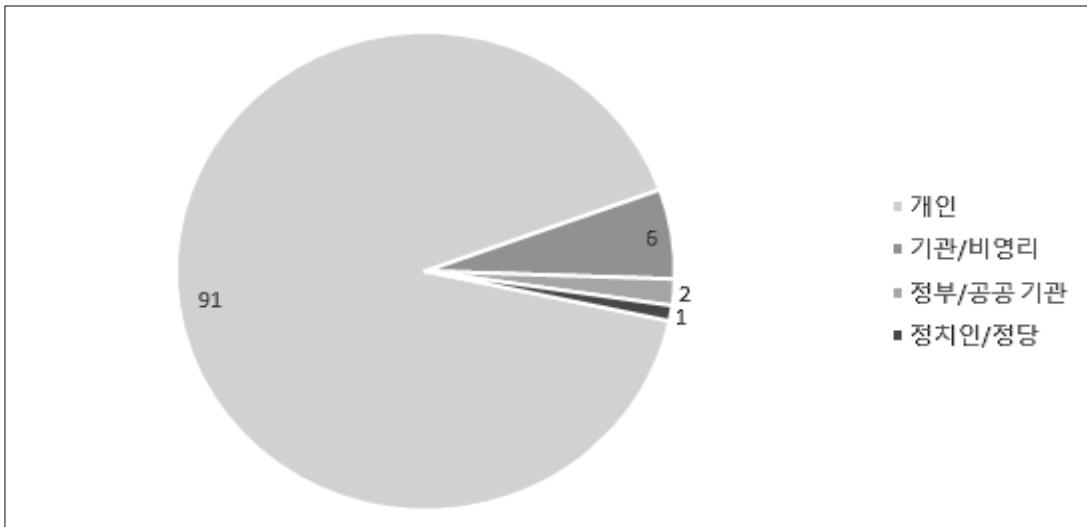
[그림 4] 불만 신청에서 제기된 이슈 (%)



* 출처: 언론위원회 연간보고서(APC Annual report) 2016/2017

대부분의 불만 신청인은 개인(616건, 91%)이었으며, 기관 및 비영리 단체가 41건 (6%), 정부 및 공공기관이 12건(2%). 정치인 및 정당이 7건(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언론불만신청자 분류별 비율(%)



* 출처: 언론위원회 연간보고서(APC Annual report) 2016/2017

불만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69%)은 신문(종이/온라인)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이 중 주(state) 신문이 289건(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농촌(regional/rural) 104건(15%), 전국지(national) 74건(11%), 지방지(suburban) 12건(2%)으로 나타났다(표 1). 잡지(종이/온라인)의 경우 13건(2%)에 불과하였다. 한편, 온라인 전용 매체의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은 181건(26%)으로 집계되었는데, 2015/2016년 81건(16%) 대비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종이/온라인)에 대한 불만은 작년 대비(82%) 상당히 감소하였다.

〈표 1〉 매체별 불만제기 건수

매체 분류		건수	비율(%)
신문 (종이/온라인)	전국	74	11
	주	289	42
	지역/농촌	104	15
	지방(Suburban)	12	2
잡지(종이/온라인)		13	2
온라인 전용		181	26
기타		23	3
총계		696	100

* 출처: 언론위원회 연간보고서(APC Annual report) 2016/2017

이러 플랫폼별 불만제기 건수를 자세히 살펴보면(표 2), 인쇄매체의 경우 121건으로 전체 건수의 1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근소한 감소치를 보였다(107건, 21%, 2015/2016). 온라인 전용의 경우 331건으로 불만제기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5/2016년 164건(33%)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였다. 한편, 2016/2017년 불만 제기 관련 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최초로 소셜 미디어가 플랫폼별 세부 통계에 포함되어 집계되었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 전용의 경우 총 9건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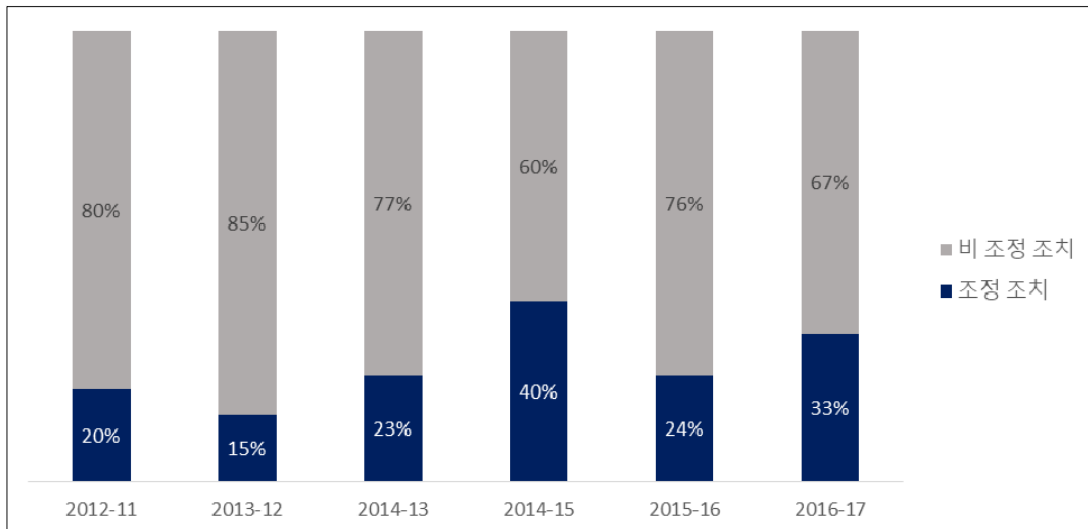
〈표 2〉 플랫폼별 불만제기 건수

플랫폼	건수	비율(%)
온라인 전용	331	48
온라인/소셜미디어	11	2
인쇄	121	17
인쇄/온라인	216	31
인쇄/온라인/소셜미디어	3	0
소셜미디어	9	1
기타	5	1
총계	696	100

* 출처: 언론위원회 연간보고서(APC Annual report) 2016/2017

2016/2017년 불만접수 건 중, 36건(33%)은 공식적 조정으로 해결되었으며, 74건(67%)은 불만 제기 후 적절한 대응으로 조정 없이 해결되었다. 지난 5년간의 조치별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6), 전반적으로 비조정 조치 건수는 다소 줄어든 반면, 조정 조치 건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조정 조치 방법별로 살펴보면, 기사 수정(amendment to article)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련 내용 삭제 13건, 사과 7건, 철회/정정 6건, 후속보도 2건, 기타 7건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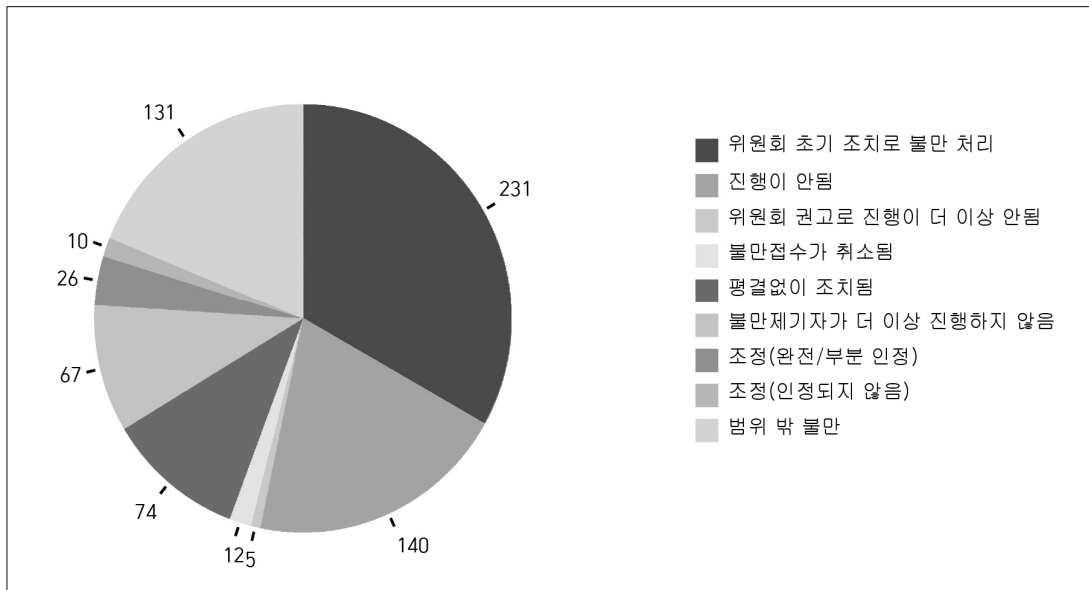
[그림 6] 불만접수 후 조치 현황 (2011-2017년)



* 출처: 언론위원회 연간보고서(APC Annual report) 2011-2017 자료 재구성

2016/2017년 696건의 불만제기 처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그림 7), 대부분 위원회의 접수 초기 단계에서 처리되거나 조정 단계 전에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1건은 위원회의 초기 조치로 마무리되었으며, 140건도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4건은 평결 없이 조치되었으며, 67건은 불만 제기자가 더 이상 진행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건수는 총 36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인정 평결을 받은 건수가 26건이었고 인정되지 않은 건수가 10건이었다. 그 밖에 상당수의 불만(131건)이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범위로 분류되었다.

[그림 7] 불만접수 후 처리 결과 (2016/2017년)



III. 최근 이슈: 명예훼손

호주에서는 최근 대중의 관심을 끈 명예훼손 사건 및 판결들을 계기로 명예훼손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Whitbourn, 2018). 그중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는 건 ‘호주통일명예훼손법(National Uniform Defamation Law)’에 대한 재검토 논의이다. 호주 정부는 각 주가 상이한 명예훼손법을 적용하는 데서 오는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2006년부터 ‘통일명예훼손법’을 시행해오고 있다(Rolph, 2008). 명예훼손법 개혁으로 사실이 적시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공익에 관계된 것인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Dwyer, 2012). 한편, ‘사과(apologies)’와 ‘무고한 배포(innocent dissemination)’ 법리가 법령상의 방어(defense) 논리로 작용하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으며, 공정정보도의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확대되었다(Dwyer, 2012). 통일명예훼손법의 제정으로 호주 각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명예훼손법의 전반적인 내용이 유사해졌으나 구체적인 조항들은 여전히 각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Rolph, 2008).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인 언론사에게 잘못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반면, 호주에서는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피고가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것이 요구된다. 즉, 호주의 명예훼손법은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기보다는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Maley, 2018).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중에 누가 진실(truth)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밝히기 힘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피고가 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Carter & Carrick, 2017).

최근 호주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호주 사상 최고 액수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져 상당한 파장이 일어났는데, 이는 명예훼손법 개정 담론에 더욱 불을 지폈다. 호주 법원은 최근 바우어 미디어(Bauer media)에 호주 출신의 할리우드 배우 레블 윌슨(Rebel Wilson)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450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레블 윌슨(Rebel Wilson)은 2015년 ‘Woman’s Day’의 출판사인 바우어 미디어(Bauer media)가 게재한 여덟 건의 기사가 본인의 명

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우어 미디어는 월슨이 연기 경력을 위해 나이와 배경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였다. 이 사건의 배심원단은 2017년 6월 출판사 측이 월슨을 거짓말쟁이로 묘사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림 8] 승소 후, 법원에서 나오는 레블 월슨(Rebel Wilson)



* 사진 출처: Media Entertainment& Arts Alliance

재판을 맡은 디슨(Dixon) 판사는 바우어 미디어가 월슨이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라는 의혹에 적절한 조사 없이 정보를 제공한 정보원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점, 의혹이 거짓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사한 기사를 내보낸 점, 월슨의 반론을 상쇄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후속 기사들을 계속 내보낸 점 등을 들어 해당 기사가 악의적이고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월슨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호주 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호주미디어협회는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38만 달러의 배상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액수를 훨씬 뛰어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이 판결은 호주 미디어들에게 경고를 보낸 셈이었다. 이에 채널나인(Channel Nine), 채널세븐(Channel Seven), 페어팩스미디어(Fairfax Media), 에비씨(ABC) 등 몇몇 미디어 기관들이 공동 항소를 하였으나 빅토리아 상소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호주에서 명예훼손 분쟁으로 법원까지 가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호

주 시드니공과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미디어 전환 센터(Centre for Media Transition)의 최근 보고서⁶⁾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명예훼손 소송 건수는 189건이었으며, 관련된 법원 결정 건수는 609건으로 나타났다.

〈표 3〉 2013-2017년 명예훼손 사건 통계

년도	소송 건수	결정 건수
2013	28	113
2014	40	120
2015	47	132
2016	44	143
2017	30	101
총계	189	609

* 출처: Trends in Digital Defamation: Defendants, Plaintiffs, Platforms 4페이지

5년 동안 집계된 총 189건의 명예훼손 사건 중, 97건(51.3%)이 디지털 상에서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들이었고, 2014년부터 디지털 명예훼손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13-2017년 디지털 명예훼손 건수

년도	디지털 명예훼손 건수	전체 건수 대비 디지털 명예훼손 비율(%)
2013	13	46.4
2014	20	50.0
2015	24	51.1
2016	24	54.5
2017	16	53.3
총계	97	51.3

* 출처: Trends in Digital Defamation: Defendants, Plaintiffs, Platforms 63페이지

6) Centre for Media Transition (2018). Trends in Digital Defamation: Defendants, Plaintiffs, Platforms. <https://www.uts.edu.au/sites/default/files/article/downloads/Trends%20in%20Digital%20Defamation.pdf>

한편, 고소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21%만이 공인⁷⁾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명예훼손 건은 일반인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할리우드 배우 레블 윌슨의 사례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가장 유명한 공인 관련 명예훼손 사건이었으며, 그 밖에 호주 정치인 조 하키(Joe Hockey), 기업인 클리브 팔머(Clive Palmer)가 미디어 기업(TV, 라디오, 온라인을 포함한 신문 및 잡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역시 눈여겨 볼 만하다고 보고서는 기술하였다.

피고인의 유형을 보면, 미디어 기업이 피고인(defendant publishers)인 경우는 2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건이 3건이었고, 페이스북은 16건으로 집계됐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원고의 승소율은 낮은 편인데, 지난 5년간 집계된 총 189건 명예훼손 사건 중 66건(34.9%)에서만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2013-2017년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원고 승소 건수

연도	원고 승소 건수	전체 건수 중 원고 승소 비율(%)
2013	9	32.1
2014	16	40.0
2015	16	34.0
2016	12	27.3
2017	13	43.3
총계	66	34.9

* 출처: Trends in Digital Defamation: Defendants, Plaintiffs, Platforms 64페이지

5) 보고서에서 공인(public figure)이라 지칭하는 대상에는 연예인, 고위 정치인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 및 시장, 대사, 고위 전문직 종사자(high profile doctors, lawyers and businessmen/women) 등이 해당됨

IV. 결론: 호주언론위원회의 나아갈 길

호주언론위원회는 2017년 3월 원주민(Indigenous)과 비원주민(non-Indigenous) 간 화해 도모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언론위원회 화해사업계획(RAP, Reconciliation Action Plan)’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계획은 호주 미디어들이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토착호주인(Torres Strait Islander Australians)에 관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양질의 보도를 증진하고, 원주민들이 위원회 및 미디어 관련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보도지침이 호주 원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일환으로 언론위원회는 원주민 출신 카라 맥그라스(Carla McGrath)를 시민 대표 위원으로 지명했다. 위원회는 지명 과정에서 카라 맥그라스가 최초의 원주민 출신 위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원주민 출신 위원이 선출된 선례⁸⁾가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정정 성명서를 내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편 카라 맥그라스의 지명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가 진보시민단체인 겟업(GetUp!)의 부대표라는 점 때문이었다.

카라 맥그라스가 지명되자마자 호주의 보수성향 신문사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맥그라스가 뉴스 코퍼레이션 인쇄/출판물을 반대하는 사회운동과 관련된 기금 마련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지적하며, 그녀가 일찍이 호주 주요 신문사들의 선거보도를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언론위원회 시민대표로서의 자질과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카라 맥그라스 지명 논란은 사실상 디 오스트레일리안과 언론위원회 간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뉴스 코퍼레이션의 대표 신문사이기 때문이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의 책임에디터인 폴 위타커(Paul Wittaker)는 언론위원회의 카라 맥그라스 지명을 두고 ‘영타리(mockery)’라 표현하며, 향후 카라 맥그라스가 참여하는 어떠한 보도 뿐만 평결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보이콧을 선언하였다. 회원사의 기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언론위원회에게 최대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그룹인 뉴스 코퍼레이션의 디 오스트레일리안이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상당히 난감한 일이었다. 결국 카라 맥그라스를 위원으로 지명한 지 1년 뒤인 2018년

8) 콜린 버크(Colin Bourke): 1982 - 1991, 나타샤 맥나마라(Natascha McNamara): 1997 - 2003.

5월 11일 위원회는 그녀의 시민대표 위원직 취소를 결정하고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일찍이 정필운(2012)이 소개한 호주의 ‘미디어와 그 규제에 관한 보고서’는 자율적인 규제기구로서의 언론위원회의 제한적인 기능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의 어려움과 실행력 부재를 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그 개선안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는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언론위원회의 독립성은 여전히 취약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그림 9] ABC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Media Watch ‘Australian Press Council v News Corp’ 보도 내용



한편, 언론위원회는 새로운 회원사 가입 홍보를 위해 ‘가짜 뉴스(Fake news)’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언론위원회의 회원사 매체들은 보도의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비회원사들의 회원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위원회의 전(前) 의장 데이비드 웨이스브롯(David Weisbrot)은 언론위원회 비회원사는 호주의 자율규제에 대한 언론사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거저먹기식(freeloading)’은 정부의 규제에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이 캠페인은 더 가디언(The Guardian), 버즈피드(Buzzfeed), 준키(Junkee) 등의 디지털 네이티브 뉴스 기관들의 회원가입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 회원사들은 매우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일부 비회원사들은 향후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비회원사 중 가장 큰 규모인 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맨 제도가 언론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림 10] 언론위원회 홍보물



호주언론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해 오고 있다. 앞서 위원회의 캠페인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호주 언론계는 정부의 개입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언론위원회의 이러한 자율규제 시스템과 회원사 기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 재정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언론위원회의 모든 결정과 평결은 사실상 해당 매체에 강제적 효력을 미칠 권한이 없다. 그 때문에 실행력 부재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위원회는 회원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정 시스템으로 인해 회원사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역시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언론위원회가 풀어 나가야 할 숙제로 보인다.

참고 문헌 REFERENCE

- 정필운 (2012). 호주 '미디어와 그 규제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과 시사. <방송통신전파저널>, 4월 통권48호, 68-73.
- Australian Government (2012). Report of the Independent Inquiry into the Media and Media Regulation. http://www.abc.net.au/mediawatch/transcripts/1205_finkelstein.pdf
- Australia Press Council (2010-2017). Annual Report 2010-2017. <http://www.australiacouncil.gov.au/news/media-centre/reports>
- Australian Press Council (2017). Strategic Plan 2016-2020. https://www.presscouncil.org.au/uploads/52321/ufiles/Fact_Sheets/Australian_Press_Council_SP_booklet_FINAL_22-09-16.pdf
- Australian Press Council (2017). Reconciliation Action Plan 2017. https://www.presscouncil.org.au/uploads/52321/ufiles/APC_Innovate_RAP_2016-2018.pdf
- Australia Press Council (2018). Media release: Press Council member is asked to resign after conflict of interest review. 2018. 5. 11. Australia Press Council.
- Australian Press Council (2017). Council Fact Sheets.
- Carter, J. S., & Carrick, D. (2017, 12, 7). Do Australia's strict defamation laws help protect high-profile abusers? <ABC News>.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17-12-07/do-australias-strict-defamation-laws-help-protect-abusers/9228018>
- Centre for Media Transition (2018). Trends in Digital Defamation: Defendants, Plaintiffs, Platforms. Univeristy of Technology Sydeny. Retrieved from <https://www.uts.edu.au/sites/default/files/article/downloads/Trends%20in%20Digital%20Defamation.pdf>
- Dwyer, T. (2012). *Legal and ethical issues in the media*.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Maley, J. (2018, 11, 9). When #metoo meets defamation law, and a brutal political culture. <The Sydney Morning Herald>. Retrieved from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when-metoo-meets>

- defamation-law-and-a-brutal-political-culture-20181109-p50f3j.html
- Bingemann, M. (2017, 6, 2). Oz will boycott decisions of 'political stack'. *The Australian*.
- Rolph, D. (2008). A critique of the national, uniform defamation laws. *Torts Law Journal*, 16(3), 207-248.
- Roy Morgan Research (2018). Newspaper masthead readership grows to 15.9 million. <http://www.roymorgan.com/findings/7496-australian-newspaper-print-readership-and-cross-platform-audiences-december-2017-201802080408>
- Whitbourn, M. (2018, 6, 22). The new battleground emerging in defamation feuds. <The Sydney Morning Herald>. Retrieved from <https://www.smh.com.au/national/the-new-battleground-emerging-in-defamation-feuds-20180618-p4zm87.html>
- Zoe Samios (2018, 5, 12). Getup's Carla McGrath declines request to resign from Press Council. *Mumbrella*.

온라인 자료

Australia Press Council. URL: www.presscouncil.org.au